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4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◈◈◈

2. 조치내용

□ 수사기관 통보 : ◈◈◈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

○ ◈◈◈은 ㈜○○○○○○○○ 공시 담당 이사로서 본건 첫 번째 미공개 중요정보*를 직무상 지득한 '24.3.5.부터 해당 정보가 공개된 '24.3.7.까지의 기간 동안,

* 자가염증질환 치료제 임상 1상 주요결과

-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및 지인 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3,367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

○ 또한 ◈◈◈은 두 번째 미공개 중요정보*를 직무상 지득한 '24.6.19.부터 해당 정보가 공개된 '24.6.20.까지의 기간 동안,

* 자가염증질환 치료제 기술이전계약 체결

-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및 지인 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5,931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
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

○ ◈◈◈은 22.11.1 ~ 24.10.14. 기간 중 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자기 계산으로 동사 주식 172,240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173조 제1항, 제174조 제1항, (舊)제443조 제1항 제1호, 제446조 제31호

□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 제24조